

1. 대출관련 비용 : 인지세, HUG 보증료(대출 신청자 본인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고객 부담분	면제	35,000원	75,000원	175,000원
HUG 보증료	보증금액의 0.13%(할인대상 및 확인서류는 3페이지 참조)				

2. 대출관련 구비서류(필수 서류 + 필수 소득증빙서류)

⇒ 대출관련 구비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 **주의** : 필수 소득 증빙서류는 계약자 본인의 자료에 한합니다. (배우자 소득 적용 불가)
- ※ 계약자 본인에 한해 신청 가능(**대리인 신청불가**), 공동명의계약자 방문 필수
- ※ **공동명의자의 경우 필수 서류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필수 서류 (모두 준비)	① 분양계약서 원본 + 계약금 납입(송금) 영수증 - 전매(증여) 로 분양권을 구입하신 분은 「매매(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증), 기본증명서(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인감증명서 1부.[대표상속인(매수인, 대출신청자) 본인 발급용]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출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④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본인과 배우자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 :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⑤ 주민등록초본 각 1부[등본상의 가족 전원의 초본을 제출]★ - 미성년자 , 기혼자의 경우 분리 세대 배우자 포함.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과거주소 이력, 주민번호 정정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과거 이력 포함) - 보증보험료 할인대상자 중 저소득가구 :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필수 소득 증빙 서류	1항 (급여소득자)	① 재직증명서(회사 발급, 날인 필수)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2년, 회사 날인 필수) - 2023년 이후 입사자 : 재직증명서 +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 날인 필수)
	2항 (개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 2023년 이후 사업자등록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3항 (연금수령자)	① 연금수급증서(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② 연금수급내역서(수령액 표기)
	4항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①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회사 날인 필수) ②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2년 회사 날인 필수)
	5항 (1~4항 미해당자 및 주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피부양자인 경우 ① 2022년 연말정산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가장 많이 사용한 1개 은행 또는 카드사 발급분(해당 은행, 카드사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지역 세대주인 경우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또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본인 납부 금액에 한하며, 미납금액 없어야 함. ※ 그 외 무소득자인 경우(① + ②), (② + ③) 택1 ① 직전년도 '사실증명원(소득 없음)' : 세무서 발급 ② 2022년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가장 많이 사용한 1개 은행 또는 카드사 발급분(해당 은행, 카드사 발급) ③ 전년도 및 현재 퇴사[폐업]자일 경우 퇴직 사실확인서 (회사 발급)[폐업증명서 (세무서 발급)]

3. 준비서류 발급처

구 분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비 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동사무소)	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없음)	세무서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ARS: 1577-1000(팩스수령)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ARS: 1355(팩스수령)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대출제한 및 유의사항

- 가. 은행의 중도금대출 취급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은행의 심사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심사기준, 대출규제(LTV, DTI),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연체, 조세체납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 중단됩니다.
- 다. 현재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주택담보대출 사용중인 자로서 생활안정자금(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목적으로 대출 신청시 주택담보대출 추가 약정[주택(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추가 매수 금지 의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중도금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라. 전 세대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총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이내, 대출신청인 기준 보증금액 3억 이내에서 본건 중도금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 마. 금번 취급할 중도금대출은 준공 후 정부의 금융정책 변경 및 은행 내규에 따라 잔금대출 취급이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자 잔금대출로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 심사선진화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바.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및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중도금대출 관련 법률 및 규정, 감독기관 지침,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카.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본 안내장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파.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 BNK경남은행 여신영업센터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23, 신화테크노벨리 1층)

대표전화 : 055 - 290 - 8700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료 할인대상 및 확인서류 [☎ 1566-9009]

1) **사회배려계층** :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 보증료 할인 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입니다.

구분	내용	구비서류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 상 (40% 할인)	< 저소득가구 >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준비
	< 다자녀가구 >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가구 >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수·구청장이 발급) - 장애인 등록증 불가함
	< 고령자가구 >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5.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준비
	< 다문화가구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 국가유공자가구 > 8.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 의사상자가구 > 9.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지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 증서, 의사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 상 (60% 할인)	< 한부모가구 >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단독 고령자가구 >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보증료의 10% 할인

○ 구비서류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본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지침으로 은행과는 무관하며 위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 1566-9009)

< 입출금통장 비대면 개설 안내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다운받아 입출금 계좌개설을 미리 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STEP 1 [사전준비]

본인명의 스마트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STEP 2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어플 설치]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경남은행을 검색하여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다운 및 설치

√ STEP 3 [계좌개설] - 입출금 계좌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어플 실행후, 순서대로 안내에 따라 계좌개설 진행

√ STEP 4 비대면 계좌(통장)개설 문의

BNK경남은행 디지털상담부(콜센터) 1600-8585(09시 ~ 17까지)

√ STEP 5 비대면 계좌(통장)개설 불가능시 인근 경남은행 창구 방문하여 발급

- 분양 계약자(대출 신청자) 본인 창구 방문 - 필수 구비 서류 : 신분증, 공급(분양) 계약서 원본
- 전매, 증여, 상속으로 구입시 추가 필요 서류 : 매매(증여) 계약서 원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 특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080-590-8282), 메일(customer@knbank.co.kr),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